이사의 책임경영을 위한 주주소송 활성화 방안

일시: 2025년 11월 11일 15:00 - 17:30

주관: 한국증권학회,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

발제1

주주 충실의무 권리구제 수단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2

미국의 주주대표소송과 그 시사점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발제3

일본과 대만의 주주대표소송과 그 시사점

고일훈 일본증권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익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정책조사관

서정 법무법인 서이헌 변호사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본 리포트에 담긴 정보에는 해당 ESG 이벤트의 콘텐츠가 포함되어있으며, 이 콘텐츠의 견해 및 보증은 해당 행사주최측의 책임으로 당사는 게재콘텐츠의 완전성 및 정확성에 대해 일체의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저작물의 텍스트, 이미지 및 레이아웃은 임팩트온이 저작권을 가지며, 임팩트온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본 저작물의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master@impacton.net으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Executive Summary

본 행사는 상법 개정 이후 새롭게 열리는 책임 구조가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 충실의무 확대와 대표소송 활성화는 단순한 법조문 변경만으로는 구현되지 않으며, 절차적 공정성 요건, 증거 접근성 개선, 입증 책임 구조 재설계 등 다층적 보완점을 확인했고, 기업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했음. 이번 논의는 개정 상법의 의미를 현장에서 재해석하고, 주주권 보호의 실질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중요한 출발점임.

key takeaway 1 충실의무 확대 이후 핵심 쟁점은 '절차적 공정성'과 '입증 구조'

- 이해충돌 사안에서 이사회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가 책임 판단의 기준
- 한국 상법은 아직 절차적 요건(특별위원회, 소수주주 MOM, 제3자 평가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실무 공백이 큼
- '전체 주주의 이익'이라는 문구가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불명확해, 이사회·기관투자자 모두 입증 책임과 판단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임

key takeaway 2 대표소송 활성화의 실제 장애물은 '증거 접근성'과 '입증 책임'

- 국내 주주대표소송은 디스커버리 부재로 인해 사실관계 입증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이며, 공정위·검찰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건만 후행적으로 인정되는 한계가 있음
- 지배주주에 대한 손익거래 공정성 판단, 업무집행지시자 존재 여부 등 핵심 쟁점은 주주 측이 입증할 방법이 거의 없는 상태
- '입증책임 전환' 혹은 '증거개시 제도' 없는 대표소송 활성화는 실효성이 없음

key takeaway 3 판례 축적의 주체는 기관투자자·액티비스트이지만, 지금 구조는 한계 있음

- 시민단체 모델은 지분율·경제적 동기 부재로 한계가 있고, 공적기구 모델은 정치화 위험과 거버넌스 논란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됨
- 기관투자자는 평판 리스크와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적극적 소송이 어렵고, 국민연금 역시 '전체 주주의 이익' 개념이 소송 근거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함
- 현실적으로 판례를 만들 수 있는 주체는 액티비스트 펀드이지만, 현행 상법의 모호성과 소송기간의 장기화 때문에 전략적 선택이 어려운 구조임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주 충실의무 권리구제 수단

(주주충실의무 도입의 구조적 의미)

주주충실의무의 명문화는 상법 개정의 정점이며, 전자주총 의무화나 이사회 구성 규율은 이를 뒷받침하는 하부 규범임. 이는 회사 중심 해석에서 주주 중심 해석으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의 변화임. 이번 개정은 학계나 관료 조직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1500만 개인투자자의 문제 제기가 누적되며 이뤄진 권력 이동의 결과임.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조문 자체만이 아니라 이를 구체화·실행할 절차적 경로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판단함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구조 정립 및 절차적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

주주충실의무는 결국 '재산 이동' 문제이므로, 권리구제는 민사적 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함. 손해배상·가처분·대표소송 등은 399·400·402·403조라는 '기찻길'을 통해 운영되는 바, 이 조문들이 회사만을 전제로 해석된다면 개정의 효과가 반감됨. 주주가 입는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조문 해석을 주주 중심으로 확장·유추할 필요가 있음. 주주 손해배상은 상법 399조의 '회사 또는 주주' 유추 적용이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민법 390조를 활용해 보완해야 함

현행 398조는 '회사와의 거래'만을 이해상충 범주로 규정하고 있어, 합병·주식교환 등 주주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은 포착하지 못함. 주주충실의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이해상충 사안에 대해 절차적·내용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장치가 필요함. 델라웨어식 기준, 즉 독립이사 다수결, 비특수관계주주 다수결, 공정성 입증과 같은 구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해상충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을 경영진이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이 적절함

(가처분·대표소송 구조의 재설계와 공시 강화 필요성)

가처분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만 인정하는 현행 구조로는 주주의 권리 보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주주의 회복불능 손해 또한 판단 기준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대표소송 역시 본질이 '회사 손해 회복'이기 때문에 합병비율 등 주주만 손해를 입는 사안에서는 사실상 기능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갖고 있음.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구제수단, 단체법적 절차 등 새로운 소송 구조 도입이 필요함

또한 신주발행 공시에서 기존 주주 이익에 대한 영향을 기재하도록 한 최근 제도 개선은 주주충실 원칙의 자연스러운 귀결임. 사전 정보 제공과 절차적 투명성이 강화될수록 주주충실의무의 실질적 집행력이 높아짐. 이는 장기적으로 주주권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미국의 주주대표소송과 그 시사점

(한국 주주대표소송의 구조적 한계와 충실의무 판단 기준의 문제)

현재 한국의 주주대표소송 제도는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 경계가 명확히 확립돼 있지 않음. 법원이 충실의무 위반 사안을 판단할 때 경영판단원칙을 폭넓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충실의무 위반이 성공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임. 이는 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나 주주에게 불공정한 결정을 내렸더라도, 절차적 문제만 없으면 면책되는 결과를 초래함

미국의 경우 충실의무 사건에서는 경영판단원칙이 아니라 '완전한 공정성(entire fairness)' 기준이 적용되며, 입증책임 또한 원고가 아니라 이사·지배주주 측에 전환됨.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주주가 입증해야 하는 영역이 넓어 실무상 소송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러한 환경에서는 정의로운 판단이 내려지기보다, 원고가 소송 부담을 견디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충실의무가 '명문화만 됐지 실행되지 않는 조항'으로 남을 위험이 있음

(절차적·실체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원 심사 강화 필요)

충실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 절차적 정당성만을 강조하는 지금의 법원 태도는 실질적 공정성 판단을 방해함. 예를 들어, 회사 인수·합병, 대규모 내부거래, 경영진 보수 등 본질적으로 이해상충이 내재된 사안에서는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직접 손상될 수 있음에도, 한국 법원의 기준은 아직 충분히 정교하지 않음

미국 심사 체계에서 핵심은 '절차가 적정했으므로 공정하다'가 아니라, 실제 결과가 공정한지까지 판단하는 이중 구조임. 절차적 공정성만 갖추면 내용을 문제 삼기 어려운 한국식 심사 기준은 충실의무 사건의 본질을 놓칠 수 있음. 이해상충·지배주주 거래·이사 보수 등 민감 사안에서는 한국 역시 실체적 공정성까지 심사하고, 그 판단 부담을 주주에게만 지우지 않는 단계적 개혁이 필요함

(대표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개편과 사전적 예방 기능 강화)

대표소송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사후 배상보다는 사전적 억지 효과가 핵심임.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표소송 제기 건수가 적고 승소율도 낮으며, 입증 책임이 주주에게 편중돼 있어 예방 효과가 제한적임. 이로 인해 이사나 지배주주가 위법행위를 했을 때도 실질적 책임 추궁이 어려워지고, 기업 내부 규율 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음

또한 소송 제기 과정에서 회사 내부 정보 접근이 제한되고, 이사회·감사기구가 사실상 방어적으로 작동하는 현실도 대표소송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임. 주주가 정보 비대칭 문제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는 패소 위험을 높여 제소 자체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됨. 대표소송의 목적은 사후 보복이 아니라 시장 내 위법행위의 발생 확률을 낮추는 것인 만큼, 절차 개선, 예컨대 정보 접근권 확대, 입증구조 조정, 사전적 중재 장치 등이 필수임

고일훈 일본증권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일본과 대만의 주주대표소송과 그 시사점

(주주대표소송의 기능과 한국·일본·대만 비교를 통한 구조적 진단)

주주대표소송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손해 회복과 위법행위 억제 두 가지 기능에 있음. 그러나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책임보험, 회사 보상제도 등으로 인해 손해 회복 기능은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임. 실제로 일본·미국에서도 대표소송 제기 이후 단기적 주가 상승 효과는 일부 존재하나, 장기적 기업가치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연구가 다수임. 이에 따라 대표소송의 핵심 목적은 위법행위 억제라는 일반예방 기능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대표소송 건수는 1997~2018년 약 130건 수준으로, 전체 74만 주식회사를 고려하면 극히 낮은 빈도임. 승소율도 약 31.7%로 일반 민사 사건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비상장 회사를 중심으로 경영권 분쟁·거래 관계 조정 등 본래 목적과 무관한 '대리적 이용' 사례도 상당함. 이는 대표소송이 회사 지배구조 개선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일본은 단독주주권·6개월 보유요건 등 제약이 적음에도 승소율이 12.4%에 불과하며, 상장회사 소송의 상당 부분이 시민단체 주도로 이루어져 남용 논란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대만은 2009년 투자자보호센터가 법정 소송 주체가 되면서 대표소송이 일정 수준 활성화됐으나, 역시 전체 상장회사 대비 비율은 높지 않고, 기관의 재원·독립성·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음

(대표소송 제기의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과 제도 설계의 구조적 병목)

대표소송은 회사가 아닌 주주가 비용을 선지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 승소 시에도 '상당한 범위 내의 비용'만 회수할 수 있게 돼 있음. 즉, 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자신의 시간·비용을 감수하지만 실질적 경제적 이익은 얻기 어렵고, 회복된 손해는 회사에 귀속됨. 이러한 구조에서는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합리적 동기가 거의 없음. 대표소송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집단적 행동 상황에서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는 한 해결되지 않음

이 점은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돼 왔음. 일본은 1993년 상법 개정으로 제소비용이 대폭 완화됐고 시민단체 주도의 소송이 증가했으나, 이는 승소를 통한 법적 교정보다는 특정 사회적 목적이나 정치적 메시지를 위한 소제기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음. 이후 2010년대를

기점으로 시민단체의 활동 약화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소송 건수는 급감했고, 이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사라질 경우 대표소송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줌.

대만의 투자자보호센터 역시 전담 주체가 있음에도 센터가 커버하는 사건 수는 전체 시장 규모 대비 극히 일부라는 한계를 안고 있음 즉 제소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지 않는 한 지분요건 완화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남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요건을 강화하면 오히려 필요한 소송까지 차단하는 역효과가 생김

(대안적 설계 방향)

대표소송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누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라는 제도적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함. 일반 주주에게 맡겨둘 경우 정보 비대칭, 비용 부담, 무임승차 문제로 지속성이 떨어짐. 이에 따라 세 가지 잠재적 제소 주체를 제시함: ① 완전성공보수 변호사 ② 소송자금 제공자(리티게이션 펀드) ③ 공적기관(한국형 보호센터)

완전성공보수 변호사나 소송자금 제공자는 패소 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승소한 경우 계약에 따라 보수를 회수하는 구조로, 소송의 성공 가능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경제적·법적 책임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음. 이는 남용적 소송을 자연스럽게 억제하는 효과도 있음. 다만 과도한 수수료 부과 위험이 존재하므로, 호주처럼 금융 라이선스 등록 및 수수료·비용 공시 체계를 마련해 시장 경쟁을 통해 정상 가격이 형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공적기관 모델은 대만 사례와 유사하나, 재원 부담의 왜곡(특정 업권만 비용 부담), 정치적 영향력 개입 가능성, 기관의 경영 판단 개입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제약이 많음. 그럼에도 위법행위 억제를 공공적 목표로 설정한다면 일정한 공적 주체가 역할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남용 방지와 관련해서는 일본처럼 소송 초기 단계에서 소각하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낮음. 승소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필터링 기준을 두어 전문적 기관에 대해서는 초기심사를 강화하고, 일반 주주에게는 본안 심사를 전제로 판단하는 이원화 구조가 타당함. 회사 비용 부담 역시 회복되는 손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적 재원 또는 시장형 제3자가 분담하는 형태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토론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상법 개정 이후 충실의무가 실제 어디에 적용되는지가 핵심 논점임. 합병, 물적분할 상장, 주식교환 등 회사 손해 없이 주주에게만 손해가 발생하는 자본거래가 주요 적용 사례로 언급돼 왔으나,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문제인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가 논의에서 빠진 점이 가장 큰 문제임. 기존 397·398조로 충분하다는 해석이 유지돼 왔으나, 조문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에 충실의무가 도입된 것이며, 따라서 사익편취형 손익거래에도 새 충실의무가 당연히 적용돼야 함

충실의무 적용 범위를 놓고 회사와 주주 이익을 대립적으로 보는 것도 적절치 않음. 이해충돌이 없는 순수 경영판단 영역은 원칙적으로 경영자 재량이 폭넓게 인정돼야 하지만,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영역에서는 충실의무가 강하게 작동해야 함. 미국식 구조처럼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판단, 이해충돌이 없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와 경영판단원칙 적용이라는 명확한 투트랙 구조가 필요함. 이를 위해 정부나 전문기관이 공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대표소송 논의와 관련해서는, 대표소송의 억제·예방 기능이 실제 이사회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음. 충실의무 도입 이후 잠재적 위법행위에 대한 이사회 내부의 경계심이 높아졌으며, 일부 회사에서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특정 거래를 특별결의로 상향하는 사례가 등장하는 등 실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다만 한국에서 공적 소송지원기구를 도입할 경우 독립성과 정치적 영향력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대만 사례와 비교해 한국의 공공기관 구조는 아직 정부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함. 따라서 전체 대표소송 구조 개편 시, 공정위의 일부 사익편취 규제를 민사·사적 집행 영역으로 이관하는 방식 등 현실적 절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김익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정책조사관)

충실의무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표소송과 이사 책임 문제가 연쇄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입법 당시에도 이러한 효과에 대한 여러 검토가 이뤄졌음. 특히 회사의 소송 행위 자체도 이제는 '전체 주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대표소송 절차에서 회사가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 재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함. 과거

제일은행 사건처럼 회사가 공동소송참가를 통해 주주 이익을 보호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충실의무 체계 아래에서는 회사가 소송 단계에서 어떤 지원·참여를 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함

충실의무 도입과 함께 기존 397조(기회유용), 398조(자기거래) 규정도 절차적 공정성과 단서 요건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는 충실의무가 기존 규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정과 결합해 실제 작동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취지임. 또한 충실의무 문언이 '전체 주주의 이익'으로 확정된 과정에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으나, 현 문언 체계에서는 향후 실무에서 손해 발생·차별적 대우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지에 대한 세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함. 현 구조는 원고가 '전체 주주에 대한 공평하지 않은 대우'를 입증해야 하므로 부담이 큼

마지막으로 최근 교환사채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충실의무 조항으로부터 곧바로 개별 주주의 금지·방해배제 청구권이 도출되기 어렵다"고 본 결정이 있으며, 이러한 초기 판례의 누적이 앞으로 충실의무 실무 기준을 형성할 가능성이 큼

(서정 법무법인 서이헌 변호사)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회사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때 주주가 대신하는 파생소송임. 대표소송의 실제 유형은 ①이사의 범죄행위 ②감시의무 위반 ③지배주주와의 손익거래 정도로 정리됨. 범죄행위는 형사절차에서 대부분 손해가 변상되기 때문에 민사 책임이 크게 문제되지 않음

감시의무 영역은 여전히 기준이 모호함. 과거에는 회사 이익을 위해 무리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면책된 사례도 있었고, 회계부정처럼 내부통제가 장기간 실패한 사안에서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손익거래 또한 공정위나 검찰 등 외부 기관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강함

대표소송의 구조적 한계는 증거 편재임. 상장사 소수주주가 내부 자료 없이 사익편취나 공정성 위반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함. 한국에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제도 도입 없이는 대표소송과 충실의무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어려움

재소 인센티브 역시 중요한 과제임. 대만식 공적기관 모델과 미국식 변호사 주도 모델 모두 장단이 있으며, 소송비용·위험·보수구조 등 현실적 고려가 필요함. 손익거래의 공정성 입증은 특히 어렵기 때문에, 충실의무 도입 취지에 맞춰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함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이사 충실의무 개정과 주주대표소송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음. 상법 개정으로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의 이익',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가 들어가면서,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가 어떤 기준으로 '주주의 이익'을 해석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해졌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나 반대 표명이, 나중에 충실의무 위반 소송에서 '주주 전체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사항임

그럼에도 상법 개정과 글로벌 사례(미국·일본·대만)를 보면 한국 자본시장의 업사이드는 크다고 봄. 최근 주가 상승 국면에서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렸고, 책임투자·거버넌스 개선·주주소송 제도 정비가 함께 가면 장기적으로 연금 수익률과 시장 신뢰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함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해서는 '건수 확대' 자체보다는,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국민연금이 직접 소송을 다수 수행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준과 원칙을 갖고 '대표소송 참여 가능성'을 시장에 신호만 줘도 예방 효과가 상당함. 실제 과거에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검토 소식만으로도 여러 기업에서 손실이 자발적으로 회수된 사례가 있었음

마지막으로, 지금 상법 구조상 이사 책임 규정 다수가 회사 손실을 중심으로 짜여 있으나, 충실의무와 연결해 주주의 손실도 대표소송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길 기대함. 회사 손실뿐 아니라 주주 가치 훼손에 대해서도, 공적 기관과 시장 참여자가 함께 책임을 묻는 구조로 발전해야 함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국내 민사소송과 판례가 지나치게 적어 기관투자자가 기업에 문제를 제기할 때 활용할 선례가 거의 없는 현실임. 제도를 정상화하려면 결국 누군가는 소송을 제기해 판례를 축적해야 함. 기존에는 시민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분율·경제적 이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함. 대만식 공적기구 모델 도입도 논의할 수 있으나, 기관의 거버넌스·소송 선택 기준 등에서 큰 논란이 예상되며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가장 자연스럽고 시장 친화적인 구조는 의미 있는 지분을 가진 기관투자자, 특히 액티비스트 펀드가 책임 있게 소송을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봄. 한국은 액티비스트 펀드가 활동 가능한 최소 시장 규모를 갖고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델이라고 판단함

다만 현행 법체계는 여전히 불명확함이 많아 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상법 개정으로 대상 행위는 넓어졌지만, 핵심 조항들이 여전히 회사를 기준으로 돼 있어 충실의무 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법적 해석 위험이 큼. 기관투자자는 소송에서 패할 경우 평판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소송 착수 자체가 높은 문턱을 가짐

결국 충분한 판례가 축적돼야 기업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자연스럽게 억제될 것이며, 액티비스트 펀드도 의미 있는 사안에 대해선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판례 축적에 나설 의지가 있을 것임

조사 및 작성

임팩트온 고현창 연구원

jameskhc@impacton.net